

2022-3호 소식지  
(2022. 3. 11. 발행)

담당자 연락처  
032-723-8512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소식



## 공지 경영현안 및 주요소식

일시	내용
'22.2.3.	'22년도 조직관리비 집행지침 공지
'22.2.8.	제22-1차 이사회(서면결의)
'22.2.15.	제22-2차 이사회
'22.2.18.	'21년도 귀속 임직원 연말정산 실시
'22.2.22.	제22-2차 임시주주총회
'22.2.23.	신임 임원 취임 및 본부장급 보직 발령
'22.2.23-24.	'22년 1분기 사회공헌활동 헌혈 실시
'22.2.25.	RE100 가입식 참석 및 'RE100 공동추진 협약' 체결
'22.2.28.	공항꿈나무어린이집 '22학년도 중간입학대기자접수 공지
'22.3.3.	법인카드 사용 지침 게시
'22.3.31.	제3기(2021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우리회사 소식지는 매달 10일 전후로 발행되고 있으며 발행 즉시 회사 홈페이지 <회사소식> 게시판, 그룹웨어 <소식지> 게시판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우측 QR코드를 통해 우리회사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지 제22-2차 이사회 결과 알림

2022년 2월 15일, 제22-2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일시 : 2022년 2월 15일 (화)
- 회의장소 :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대회의실
- 출석임원 : 참석 5인 / 제적 7인

보고번호	보고안건명	결과
2022-1호	전차(제21-10차) 이사회 결과보고	원안접수
2022-2호	2021년 연간 감사 결과 보고	원안접수
의안번호	의결안건명	결과
2022-3호	제3기(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안)	원안의결
2022-4호	제3기(2021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안)	원안의결
2022-5호	제3기(2021회계연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안)	원안의결
2022-6호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안)	원안의결
2022-7호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2022-8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 공지 상임이사 부임 및 보직 발령

2022년 2월 23일 우리회사의 상임이사님 두 분이 신규로 부임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본부장급 보직발령이 있었습니다.

김필연 사장님과 먼저 부임하신 한유진 상임감사님 그리고 박성규 상임이사님을 포함하여 이번에 부임하신 두 분의 이사님을 포함한 2기 경영진 분들께서는 직원들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 ◁ 임원 보직 발령 ▷

경영본부장: 박성규 상임이사  
사업1본부장: 김권용 상임이사  
사업2본부장: 이상욱 상임이사



좌측부터 이상욱 상임이사(사업2본부장), 김필연 대표이사 사장, 박성규 상임이사(경영본부장), 김권용 상임이사(사업1본부장)

## 규정안내 사규 업데이트 안내

우리 회사 사규(규정, 세칙, 지침) 및 전체 총괄표는 그룹웨어 <내부규정>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명칭	제/개정일자
규정	직제규정	'22.2.15(14차 개정)
	보수규정	'22.2.15(7차 개정)
	계약사무처리규정	'22.2.25(규정폐지)
세칙	성희롱·성폭력예방 시행세칙	'22.3.3.(1차개정)
절차서	계약관리절차서	'22.2.25(2차 개정)

사규의 별지 및 별표 활용을 위해 한글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기획예산팀(032-723-8513)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2-3호 소식지  
(2022. 3. 11. 발행)

담당자 연락처  
032-723-8512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소식



## 현장소식 경영진 현장 방문

2월 한달 동안 우리 회사 경영진들이 각 작업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하여 경영본부장님과 각 사업본부장님들께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사고발생 위험지역과 근로자 휴게실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회사 모든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2.2.8. 탑승교 업무현장 방문



▲ 2022.2.22. 환경미화 업무현장 방문



▲ 2022.2.24. 사업2본부 업무현장 방문



## 공지 RE100 공동추진 협약식



(왼쪽부터) 김필연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사장, 김중서 인천공항에너지(주) 사장,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위원장, 김경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황열현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사장, 양기범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이사

‘2022년 2월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시아 공항 최초로 글로벌 RE100 가입을 공식 선언하고 2040년까지 공항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TCG)과 카본 디스클로저 플랜(CDP)이 주도하는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으로,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사전적격성 심사 및 경영진 면담 등 5개월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아시아 공항 가운데 최초이자, 영국 히드로공항과 게트윅공항에 이어 세계 공항 중에서는 세 번째로 가입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글로벌 RE100 가입에 따라 공사는 2030년까지 인천공항 전력 사용량의 60%, 2040년까지 100%를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해, RE100 권고기준인 2050년 보다 10년을 앞서 RE100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회사를 비롯한 인천공항 자회사 4개사와 RE100 실행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RE100 공동추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자립공항으로 도약을 위한 인천공항의 계획에 임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3호 소식지  
(2022. 3. 11.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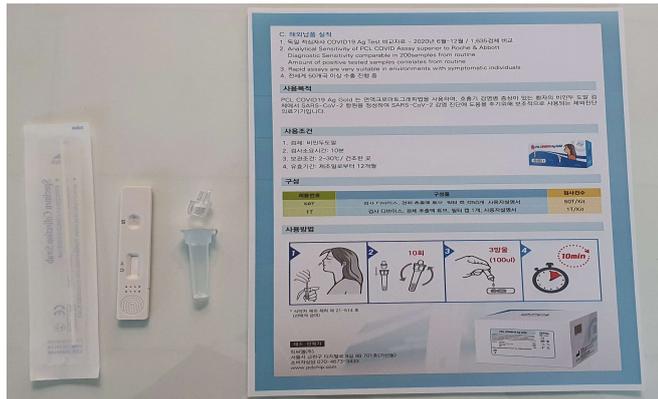
담당자 연락처  
032-723-8512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소식



## 안전보건 COVID19 자가검사키트 배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는 각 사업소에 자가 검사 키트를 배부했습니다. 본 키트는 야간 근로자 중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배포된 것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배포될 예정입니다.



##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올해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직원분들께서는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을 가진 법령입니다. 이번달 소식지에서는 그 중 1가지 조항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동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근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급박한 위험상황 NO라고 외치세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이것만 꼭! 알아두세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명확해집니다!

**이유**  
산업재해 발생 위험  
근로자 작업중지/긴급 대피 시 상급자에게 보고  
상급자의 조치

**조치**  
산업재해 발생 위험  
근로자 즉시 작업중지

**법령 요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 등은 근로자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중태를 우려하여 긴급히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4.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를 긴급히 작업중지를 요구할 때에 있어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법적 불응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망사고 발생(위험)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망사고 발생위험 →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작업중지 → 초기대응요청 시 → 긴급대피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 보고 → 신고 및 응급조치 (소방서, 고령노동자지원 등)

위험상황 개선조치(시정요구) → 현장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시정요구)

## 안전보건 코로나19 대응지침(20차)

'22년 3월 1일 정부의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회사 코로나19 대응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변경된 대응 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코로나19 대응기준(20차)』 발췌

#### 4. 코로나19 대응 공통사항

##### □ 확진자 격리해제 및 복귀 기준

○ 확진자는 격리해제가 되는 날 의료기관 격리해제 통지서 또는 보건소 문자 또는 격리해제 통지서(보건소에 직접 요청)를 **인사팀에 제출**한다.

구분	정의	대응 절차(내용)	
의심 환자	① 신속항원 검사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진자 접촉</li> <li>■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접촉</li> <li>■ 코로나19 의심증상</li> </ul>	가. 신속항원검사 실시 - 지정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자가 나. 검사결과 - (양성) PCR 검사 실시 ⇒ ②대응 - (음성) 정상 출근
	② PCR 검사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항원검사 양성</li> <li>■ 보건당국 개별통보 검사 대상자</li> <li>※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통보됨</li> <li>■ 의사소견서상 코로나19 의심자</li> </ul>	가. PCR 검사 실시 - 결과확인 시까지 자가 격리 (공가) 나. 검사결과 - (양성) 격리 치료 - (음성) 정상 출근
	③ 가족/동거인 PCR 검사 대상인 경우	-	가.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정상출근
	④ 가족/동거인 확진자 경우	-	가. PCR 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정상 출근 - 결과확인 시까지 자가격리(공가) 나. 가족/동거인 PCR 검사일로부터 6-7일차 신속항원검사의무 실시 - 지정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자가 ※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음
확진자	■ PCR 검사 양성	보건당국이 정하는 기간동안 격리	

2022-3호 소식지  
(2022. 3. 11. 발행)

담당자 연락처  
032-723-8512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소식



## 사회공헌 '22년 1분기 사회공헌활동

'2022년 2월 23~24일 양일간 우리회사의 '22년 1분기 사회공헌 활동인 헌혈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회공헌활동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시행하여 헌혈 차량의 공항 방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하루씩 시행된 이번 사회공헌활동에는 총 149명의 임직원이 참여해주셨고 적격자인 123명의 헌혈이 실시되었습니다.

많은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사회공헌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지 신한은행 금융거래 혜택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한은행 금융거래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 임직원분들 위한 상주직원 전용 신용대출**
  - 대출금리 최저 연 3.52% (22.02.21 기준)  
(우대금리 1% 적용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0.5% 금리가산)
  - 대출한도 최고 1억원 (차주 신용도별 연소득 60 ~ 100% 차등 적용)
- 세금 줄이는 필수 아이템, 신한은행 IRP**
  - 자유롭게 납입, 향후 연금까지 받을수 있는 절세상품
  - 최대 16.5% 세액공제 효과
- 담당자점**
  - T1 <프로 김진현 032-743-5111>
  - T2 <프로 서석 032-226-5111>
  - 공사(출) <팀장 이상원 032-743-6091>
  - 화물(출) <프로 윤종현 032-743-6083>



<지점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신한 IRP 안내>

## 공지 2022년 청렴·반부패 교육 실시

'22년 특정감사 처분요구서 내의 '전 직원 대상 청렴·반부패 교육' 통보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교육은 집체교육과 전파교육 2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청탁금지법 및 윤리규정,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 <교육 실시 계획>

-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 일 시: 2022. 3. 7.(월) [1부] 13:30~14:30 [2부] 15:00~16:00
  - 장 소: 지원부서 회의실
  - 대 상: [1부] 임원, 지원부서 [2부] 사업소 소장, 팀장
  - 내 용: 청탁금지법 및 윤리규정, 위반 사례 교육
- 교육자료 전파교육
  - 기 간: 2022. 3. 2.(수) ~ 3. 9.(수)
  - 대 상: 전 직원(집체교육 대상자 제외)
  - 내 용: 청탁금지법 및 윤리규정, 위반 사례 교육
  - 방 법: 교육자료(PPT 파일, 영상 링크) 배포 및 집합교육 병행 실시

본 교육 결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임직원 모두 청렴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부탁드립니다.

2022-3호 소식지  
(2022. 3. 11. 발행)

담당자 연락처  
032-723-8512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소식



## 윤리경영 청렴윤리 뉴스레터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각종 부패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 ▲ 지방의원이 본인 및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입니다.

신고는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종합민원센터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감사팀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 집중신고기간 운영

## 2. 28.(월) ~ 4. 30.(토)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http://www.clean.go.kr)

신고대상

-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 지방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고, 보·포상금 지급도 가능 | 상담은 국번없이 1398,110

국민권익위원회

## 윤리경영 청탁금지법 주요사례

###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사회자 역할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공청회, 간담회 등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등을 말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청렴·윤리 관련 신고 현황]

부패임직원 징계 운영 현황	0건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행동강령 위반)	0건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갑질 피해 신고 지원 센터



갑질 또는 금품향응수수 문의제보 받습니다.

인하국제의료센터 7층 (감사그룹)  
gapjil@airportos.co.kr

